

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1년 9월 16일(목)
행정기획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1. 8. 23. 성북구청장 제출(의안번호375호)
나. 회부일자: 2021. 8. 26.
다. 상정일자: 제28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
【2021. 9. 7. 상정·의결(원안가결)】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기획재정국장 한재헌)

가. 제안이유

상위법인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및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, “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”를 적용하여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및 시행령 개정사항 등 반영

구분 내용	근거법령	구 조례	
		기존	변경
공무원 위원	영 제74조제3항 (위원회)	안) 제2조제3항 없음	안) 제2조제3항 공무원 포함
보궐위원의 임기	자치법규입안 길 라잡이	안) 제5조제3항 전임자의 남은기간	안) 제5조제3항 삭제
회의공표	법 제27조의2, 영 제75조의2	안) 제10조 회의 비공표	삭제

-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른 조문 등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이병곤)
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의 일부개정에 따라, 이를 반영하여 우리 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「없음」

5. 토론요지: 「없음」

6. 심사결과: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의 요지: 「없음」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「없음」